

파주시통·리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-23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3. 31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증가 및 신마을 형성으로 인한 여건변화로 현행 조례상의 설치 기준 등 일부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아 통·리·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,
- 도농복합시인 우리시 여건을 감안하여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설치기준을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일반지역으로 분리하여 실정에 맞게 마련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통·리·반설치 조례의 규정목적에 폐치·분합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및 제6항을 추가(안 제1조).
- 지금까지는 통·리의 설치기준을 4개반 내지 30개반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·리는 4개반 이상으로 구성하며 농촌지역 신마을 형성시에는 최소 2개반으로 구성 할 수 있도록 하고, 다만 기존 형성된 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여 현행 실정에 맞도록 함 (안 제3조제1항).
- 지금까지는 반의 설치기준을 20가구 내지 80가구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구조에 따라 10가구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획일적인 기준을 조정함. (안 제3조제2항).
- 설치기준에 맞지 않을시 통·리·반을 폐치·분합할 수 있는 조항 신설(안 제3조제3항).

파주시통·리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통·리·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제4조제5항”을 “제4조제4항 내지 제6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중 “통을 두며”를 “동에는 통을 두며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설치기준) ①통·리는 건물구조와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4개반 이상으로 하며,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신마을 형성시 주민들의 정서동을 감안하여 최소 2개반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. 다만, 기존 형성된 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.

②반은 건물구조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20가구 내지 80가구로 구성한다. 다만,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건물구조에 따라 10가구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않는 통·리·반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읍·면·동장의 건의에 따라 폐치·분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읍·면·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제4조 제4항 내지 제6항.....
제2조(하부조직)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·면·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·면에는 리를 두고, <u>통을 두며</u> 통·리에는 반을 둔다.	제2조(하부조직) <u>통에는</u> <u>통을 두며</u>
제3조(확정기준) 통은 4내지 30개반으로, 반은 20내지 80가구(읍면지역은 20내지 50가구)로 구성한다. 다만, 100가구(읍면지역은 80가구)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.	제3조(설치기준) ① <u>통·리는 건물구조와 취락</u> <u>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 관계를</u> <u>감안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4개반 이상</u> <u>으로 하며, 농촌지역의 신마을 형성시 주민</u> <u>들의 정서등을 감안하여 최소 2개반 이상</u> <u>으로 구성할 수 있다. 다만, 기존 형성된</u> <u>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.</u> ② <u>반은 건물구조와 취락형태 등을 고려</u> <u>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20가구 내지 80</u> <u>가구로 구성한다. 다만, 공동주택 밀집</u> <u>지역의 경우에는 건물구조에 따라 10가구</u> <u>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.</u>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않는 <u>통·리·반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읍·</u> <u>면·동장의 건의에 따라 폐지·분합할 수</u> <u>있다.</u>

파주시통·리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이 조례안은 2004년 3월 3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1. 제안이유

-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증가 및 신마을 형성으로 인한 여건변화로 현행 조례상의 설치기준 등 일부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아 통·리·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,
- 도농복합시인 우리시 여건을 감안하여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설치기준을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일반지역으로 분리하여 실정에 맞게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통·리·반 설치 조례의 규정목적에 폐치·분합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및 제6항을 추가. (안 제1조)
- 지금까지는 통·리의 설치기준을 4개반 내지 30개반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·리는 4개반 이상으로 구성하며 농촌지역

신마을 형성시에는 최소 2개반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, 다만 기존 형성된 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여 현행 실정에 맞도록 함. (안 제3조제1항)

- 지금까지는 반의 설치기준을 20가구 내지 80가구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구조에 따라 10가구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획일적인 기준을 조정함. (안 제3조제2항)
- 설치기준에 맞지 않을시 통·리·반을 폐치·분합할 수 있는 조항 신설. (안 제3조제3항)

3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증가와 패키지마을 조성 등으로 새로운 주거단지가 형성되는 등 여러가지 여건변화로 인해 현행 조례상의 통·리·반 설치기준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일선행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통·리·반 설치기준을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일반지역으로 분리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, 안 제3조제1항에서는 통·리의 설치기준을 4개반 내지 30개반으로 하던 것을 4개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농촌지역의 새로운 마을 형성 시에는 주민들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최소 2개반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- 동조 제2항에서는 반의 설치기준을 현행 20가구 내지 80가구로 구성하던 것을 단서규정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경우는 건물구조에 따라 10가구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이 같은 설치기준은 공동주택 15층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준 1개 라인 30가구를 1개반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아파트거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.
-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통리반의 설치기준이 맞지 않을 시 통·리·반을 폐치·분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음
-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과 제5항 규정 등에 의거 행정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·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근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- 그동안 통·리·반 설치기준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어 반사회 운영 등 일선행정 운영에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특히 아파트 주민들의 반 재조정 요구가 다수 있었던 상황에서 통·리·반 설치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임.
- 그러나 주민편의 위주만으로 무리하게 통·리·반 등이 설치될 경우 통·반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- 참고적으로 1개 통·리 증가 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통·리장들의 기본수당과 상여금, 회의참석 수당 등 3,280천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며 1개반 증가 시에는 50천원의 예산이 소요됨.

지방자치법

제4조 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 ⑤통·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통·리를 2개이상의 통·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통·리를 하나의 통·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통·리(“행정통·리”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⑥제5항의 행정통·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